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행정안전부 (재난관리정책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와 상기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,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·신고 등의 업무 위탁(안 제9조~제11조)

-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
- 대행자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

나.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(안 제33조)

-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영 제73조제4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.)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수탁기관의 장은 대행자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현황 등”이라 한다.)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대행자가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수탁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수수료)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의2 단서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5호의2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명 (상호 또는 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설립일	
	주소 전화번호(FAX, E-mail):		

등록사항	업무 분야 []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[]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[]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[]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[]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 업무 []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업무 [] 1) 풍수해 부문 [] 2) 지진 부문 []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
	기술인력 총 ()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() 기사() 산업기사() 학력·경력자 박사() 석사() 학사() 전문학사()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이
이
이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(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나.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	수수료
업무처리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3.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「자연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」에 따른 수수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**업무처리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** 위의 **업무처리자**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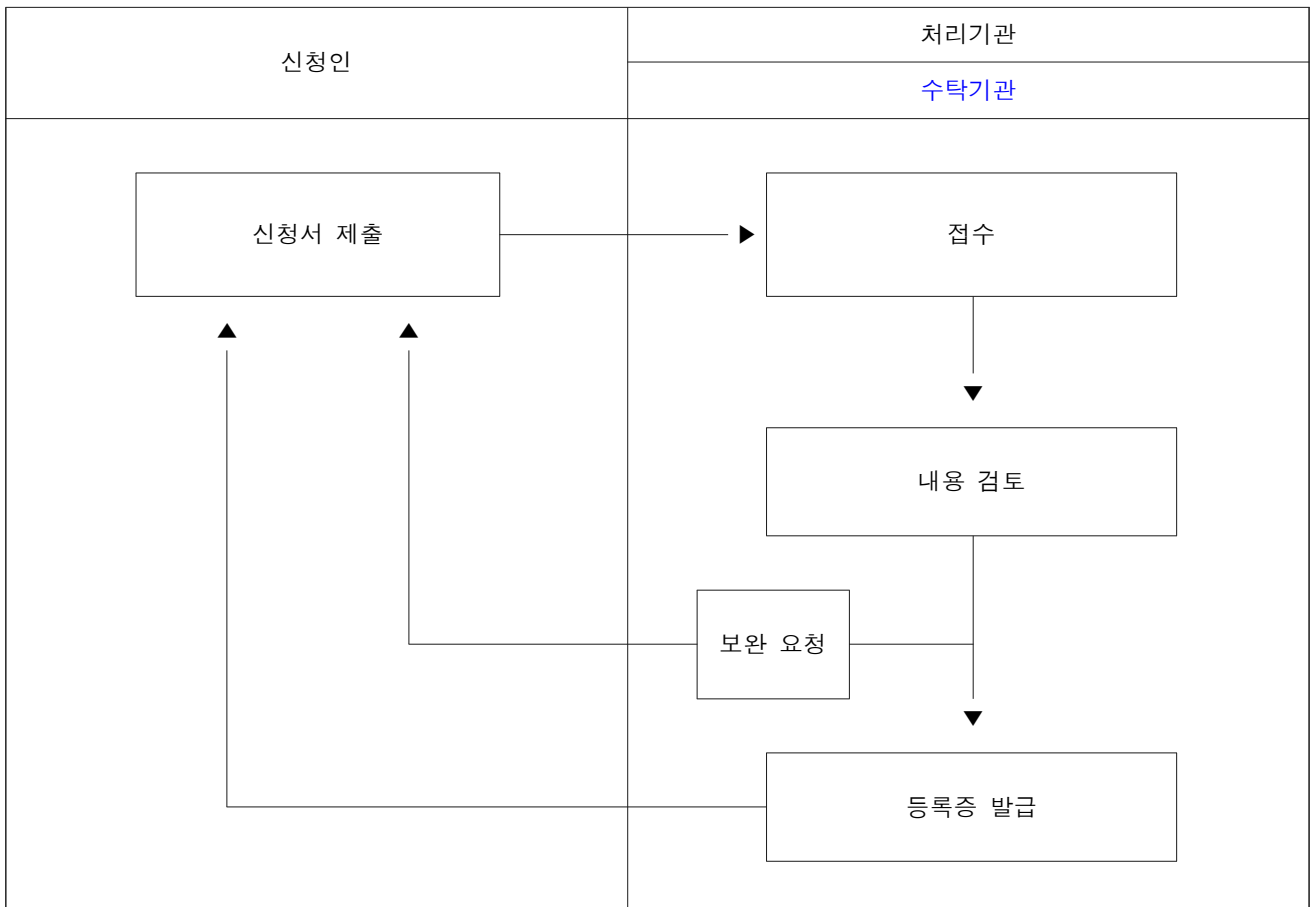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종절지(80g/㎡)]

등록번호 제 호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

명칭 또는 상호

대표자 성명

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

사무소 소재지

전화번호(FAX, E-mail):

업무 분야

- 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
- 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
- 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
- ☐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
- ☐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 업무
- ☐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업무
 - ☐ 1) 풍수해 부문
 - ☐ 2) 지진 부문
- 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

등록 연월일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수탁기관의 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[illegible]

<행정처분사항>

연월일	내 용	확인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등록번호				
	명칭 또는 상호		대표자 성명(생년월일)		
	소재지		전화번호(FAX, E-mail)		

변경 등록 사항	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연월일	변경 사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 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절지(80g/㎡)]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2.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임대차 계약서(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.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나.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	수수료
업무처리자 확인사항	1.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) 나. 사업자등록증 2.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.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: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「자연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」에 따 른 수수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,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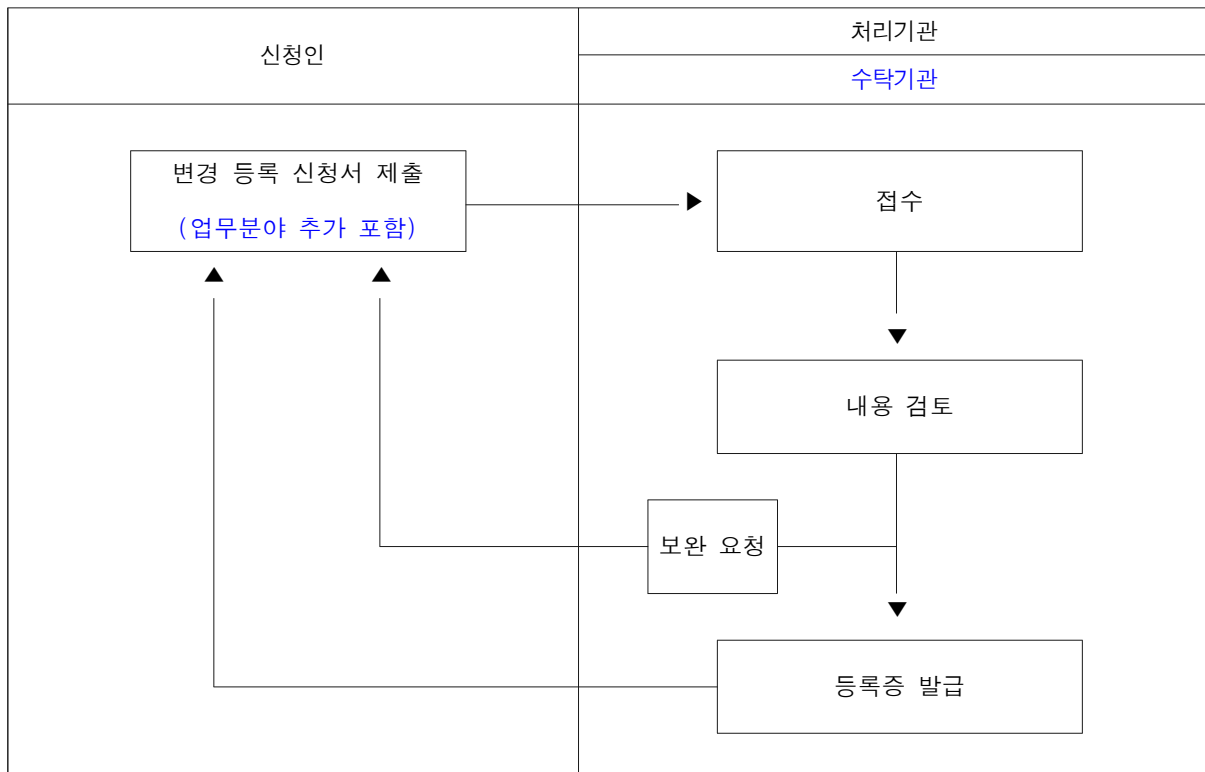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방재관리대책대행자

[] 업무 휴업
[] 업무 폐업 신고서
[] 업무 재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 고 인	상호(명칭)		
	등록번호	등록일	
	대표자 성명	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	

휴업기간·폐업일 또는 업무 재개일

사유

비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([] 업무 휴업, [] 업무 폐업, [] 업무 재개)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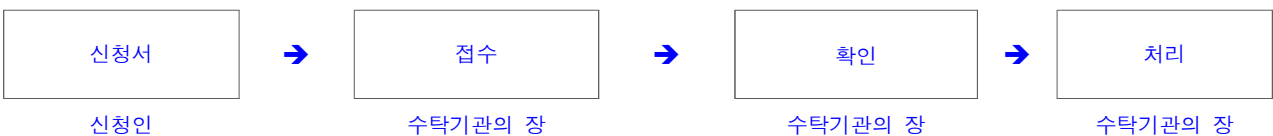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(휴업,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,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)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영 제73조제4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.)의 장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수탁기관의 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(이하 “대행자등록	③ <u>수탁기관의 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0조(대행자 변경 등록 등)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전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수탁기관의 장은 대행자 등록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현황 등”이라 한다.)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대행자가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10조(대행자 변경 등록 등) ① --

수탁
기관의 장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수탁기관의 장-----

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)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·폐업·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수탁기관의 장-----

-----.

제11조(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) ① -----

----- 수탁기관의 장-----.

② 수탁기관의 장-----

-----.

제33조(수수료)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의2 단서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